

유언대용신탁 특약

제1조(목적 및 우선순위)

- ① 이 특약은 위탁자와 수탁자인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가 체결한 종합재산신탁계약(이하 “본 계약”이라 한다)의 내용을 추가, 수정 또는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서 위탁자의 사망 이후 신탁재산에 대한 수익권을 취득할 수익자를 지정하고 위탁자의 재산을 수탁자가 수탁받아 위탁자가 정한 방법으로 신탁재산을 운용 및 관리함에 따라 신탁재산의 급부를 수익자에게 안정적으로 교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② 이 특약과 본 계약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 이 특약이 우선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 ① “사후수익자”라 함은 위탁자의 사망 이후 신탁재산의 수익권을 취득하도록 지정받은 자를 말한다.
- ② “사망통지인”이라 함은 위탁자의 사망사실 등을 수탁자에게 통지하는 의무가 부여된 자를 말한다.

제3조(대상 신탁재산)

[별지] ‘개별재산신탁계약 유언특약 세부내역서’에서 정한 개별재산신탁계약에 대하여만 이 특약이 적용된다.

제4조(신탁계약기간)

- ① 신탁계약기간은 위탁자의 사망 시까지로 한다.
- ② 위탁자는 제10조의 추가약정에 따라 신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위탁자 사망 이후라도 신탁재산의 이전 집행을 일정 기간 유보하는 조건을 결부할 수 있다.

제5조(수익지급 및 사후수익자의 지정·변경)

- ① 본 계약의 사후수익자는 [별지] ‘개별재산신탁계약 유언특약 세부내역서’에 기재된 자로 한다.
- ② 수탁자는 위탁자 사망 후 신탁원본 및 신탁이익을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지급한다.
 1. 사후수익자
 2. 사후수익자가 사망하거나 수익권을 포기한 경우 사후수익자의 법정상속인 (수탁자가 인지한 경우에 한한다)
 - ③ 다음 각 호에 따라 사후수익자를 지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자는 수탁자가 정한 양식의 신청서를 수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후수익자가 지정되지 않은 경우
 2. 사후수익자가 위탁자보다 먼저 사망하거나 수익권을 포기한 경우
 3. 기타의 사유

제6조(사망통지인의 지정 및 변경 등)

- ① 위탁자는 사망통지인을 지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수탁자가 정한 양식의 신청서를 수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망통지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수탁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사망통지인 이외의 제3자도 위탁자 또는 사후수익자의 사망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수탁자에게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사망통지인이나 사후수익자의 상속인 중 1인에게 위탁자 또는 사후수익자의 사망사실을 확인한다.
- ③ 수탁자는 위탁자의 제1항에 따른 통지의 지연 및 허위·부실 통지로 발생한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수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7조(상속세 신고 및 납부대행)

- ① 위탁자 또는 사후수익자는 위탁자 사망 시 상속세 신고를 대행할 세무사 지정권한을 수탁자에게 부여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수탁자에게 세무사 지정권한이 부여된 경우, 수탁자는 위탁자 사망 즉시 위탁자의 사망과 관련한 상속세 신고를 대행할 세무사를 지정하고 사후수익자에게 통보한다.

제8조(유류분 반환의 청구 또는 소송제기 시 업무처리)

- ① 사후수익자는 위탁자의 상속인으로부터 유류분 반환의 청구가 있거나 소송이 제기되는 등 상속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② 수탁자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경우 사후수익자에 대한 신탁재산의 교부를 정지한다.
- ③ 사후수익자와 유류분 반환 청구자 간 합의가 있거나 유류분 반환 소송의 판결이 확정되는 등 상속과 관련한 분쟁이 종결되어 더 이상 다툼의 여지가 없는 상황이 되었다고 수탁자가 확인하기 전까지 사후수익자는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의 교부를 청구할 수 없다.
- ④ 수탁자가 고의나 과실 없이 제1항의 분쟁이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본 계약 및 이 특약의 내용에 따라 신탁재산을 사후수익자에게 이전·분배하거나 이익을 지급함에 따라 위탁자의 상속인, 사후수익자, 기타 관계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수탁자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9조(유언과의 관계)

- ① 위탁자가 이 특약 신탁재산과 관련하여 이 특약 이전에 별도의 유언을 한 경우 해당 유언 중 신탁재산에 대한 부분은 철회한 것으로 본다.
- ② 위탁자는 이 특약 체결 이후 신탁재산과 관련하여 별도의 유언을 하고자 하는 경우, 이 특약의 해지를 선행하여야 한다. 이 특약을 해지하지 않고 신탁재산과 관련한 유언을 한 경우, 수탁자는 고의나 과실 없이 이 특약을 신뢰하여 행한 신탁재산의 이전·분배 및 이익의 지급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10조(추가약정)

- ① 이 특약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 위탁자와 수탁자는 협의하여 [별지] ‘개별재산신탁계약 유언특약 세부내역서’에

정한 바에 따라 추가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추가약정의 내용은 신탁관계법령 등에 위배되지 않아야 한다.

1. 위탁자, 수탁자, 사후수익자 등 이 특약의 이해관계자 간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경우
 2. 신탁재산의 사후수익자 배분과 관련한 별도의 신탁보수를 책정하고자 하는 경우
 3. 기타 이 특약의 내용을 구체화하거나 다르게 정하고자 하는 경우
- ② 이 특약의 내용과 추가약정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 추가약정의 내용이 우선한다.

년 월 일

위탁자	주 소 : 생년월일(사업자번호) :	성 명 :	(인/서명)
수탁자	주 소 : 생년월일(사업자번호) :	성 명 : 미래에셋증권(주) 부(점)장	지점 (인/서명)

※본 계약서류는 금융소비자보호법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별지] 개별재산신탁계약 유언특약 세부내역서

계좌번호		계약명		계약번호	
특약여부	<input type="checkbox"/> 상속신탁	신탁재산	<input type="checkbox"/> 금전 <input type="checkbox"/> 유가증권 <input type="checkbox"/> 부동산 <input type="checkbox"/> 금전채권		

구분	특약 세부내역서	계약서 근거조항
사후수익자	“사후수익자 정보”에 의함	제5조
사망통지인	“사망통지인 정보”에 의함	제6조
추가약정		제10조

▷ 사후수익자 정보

순번	원본 수익자			이익 수익자			계약서 근거조항
	계좌번호	고객명	비율(%)	계좌번호	고객명	비율(%)	
1							제5조
2							
3							
4							
5							

▷ 사망통지인 정보

순번	계좌번호	고객명	계약서 근거조항
1			제6조
2			
3			
4			
5			